

산업통상자원부 기술개발사업 공고문 설명자료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대표 중장기 기술개발사업인 “산업핵심 기술개발사업”의 신규과제를 공고하고 신청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산업핵심기술 개발사업은 20개 기술분야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8개 기술분야에서 22개 과제가 공고 되었습니다 (산업부 기술개발사업 설명은 [첨부1] 참조).

□ **공고 분야 : 화학공정, 금속재료, 섬유 의류, 그린카, 스마트카, 조선해양, 산업용기계, 로봇 (8개)**

산업부 기술개발사업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한인과학기술자 여러분들께서는 [첨부2] 공고문을 참고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과제 리스트는 14페이지 참조).

참고로, 외국기관·기업은 산업부 기술개발사업에 단독으로 참여하실 수는 없으며, 한국 기관·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셔야 합니다. 이 때, 한국 기관·기업이 주관기관이 되고, 외국기관·기업은 참여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과제에 참여하고는 싶으나 우리나라 기업·기관과의 네트워크가 없어 컨소시엄 구성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정보공유게시판”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게시판의 목적은 신규과제에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서로 연락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돕는 것입니다. 관심 있는 과제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기술과 희망하는 협력방법 등을 게시판에 글을 남기면, 관심 있는 기관의 연구자들이 보고 연락을 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산업부/KEIT가 컨소시엄 구성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기관들 간 자발적인 연락을 통해 컨소시엄을 구성하게 됩니다 (KEIT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 산업부 기술개발 편당 기관입니다).

□ 정보공유 게시판

- 내용 : KEIT 홈페이지에 『게시판』을 운영하여 신규 사업에 참여코자 하는 연구자간 컨소시엄 구성이 용이하도록 정보교환의 장을 마련
 - 게시판 위치 : <http://itech.keit.re.kr> 메인페이지 ▷ 왼쪽하단 업무바로가기 ▷ “산업기술 정보공유게시판” 클릭
 - 활용방법
 - 관심이 있는 과제제안요구서(RFP)별로 해당과제 참여를 위한 정보를 검색하여 타 기관에서 올려놓은 공동연구 참여조건을 열람하거나
 - 관심기관이 적극적으로 공동연구를 추진할 연구자를 찾는다는 내용을 게시판에 업로드
- * 재외한인공학인 등 해외 연구자도 사업 참여를 위해 게시판 활용 가능

① <http://itech.keit.re.kr> 접속

② 산업기술 정보공유게시판 클릭

③ [광고명]에 사업광고명 선택

④ [RFP]에 관심있는 과제 선택

⑤ [글쓰기] 눌러 정보 작성

< 정보공유게시판 접속 및 게시글 작성 방법 >

산업기술 정보공유 게시판

공고년도: 2016

공고명: 2015년도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RFP명: 선택

유형: 전체 | 제목

번호	RFP NO.	제목	기관역할/구분
18		바이오매스 기반 친환경 분체도료용... 당 과제의 참여기관으로 참가희망합니다	참여기관(영리)/공급자
17		의류용 아크릴 섬유를 원료로 한 ... 의류용 아크릴 섬유를 원료로 한 저가 탄소소재 기술 개발	참여기관(영리)/공급자
16		(1세부) 항공 항공 기능의 촉타... 1세부 항공 항공 기능의 촉타이드 및 화강통 개발	참여기관(영리)/공급자
15		선박용 세라믹 담체 및 환광촉매 ... 허니컴형 세라믹 담체제조기술	세부주관기관/공급자
14		대면적 열미스커울 복합 전자소자 ... 투명, 비투명 코팅막 두께, 균일도 검사 기술 전문	참여기관(영리)/공급자
13		복내장 치료 및 안압축압이 가능한... 참여기업이 되고 싶습니다.	공동주관기관/수요자
12		반응 중합을 이용한 열가소성 탄소... 촉발제인 담양 화학회사 참여 희망	공동주관기관/공급자
11		(2세부) Low GWP 냉매대... 참여기관으로 참여 가능하십니까?	참여기관(비영리)/공급자
10		(2세부) 단백질질을 이용한 난치성... 건선질환억제 단백질	참여기관(비영리)/공급자
9		(1세부) 천연물 유래 화합물을 ... 천연물유래 마도피코부염 억제제기기술실용화	참여기관(비영리)/공급자

산업기술 정보공유 게시판

공고년도: 2016

공고명: 2015년도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RFP명: 바이오매스 기반 친환경 분체도료용 폴리머스테르의 수지 개발

유형: 참여기관(영리)참가 | 공고/수요 구분 | 공급자

정보공유회 참여여부: 참석안함

컨소시엄 구성여부:

제목: 당 과제의 참여기관으로 참가희망합니다

내용: 당사는 분체도료용 폴리머스테르의 수지를 전문적으로 개발, 생산하여 국내 및 해외 분체도료 기업에 공급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입니다. 바이오매스 단량체를 적용하여 폴리머스테르를 촉매를 개발에 성공한 사례가 있으며 바이오매스 유래한 단량체를 이용하여 제조한 폴리머스테르 수지 기술과 분체도료 기술에 대해 특허 출원도 하고 있습니다. 당 과제에 당사의 수지 제조기술 노하우를 접목하면 정량적 성과를 달성할 자신이 있습니다. 참여기관으로 참가를 희망하며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 없음

성명: [redacted] 연락처: [redacted]

EMAIL: [redacted] 소속기관: [redacted] 주식회사: [redacted]

< 정보공유게시판에 올라온 게시글 예시 → 기관/담당자/연락처/E-mail 확인 가능>

이번 공고는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의 2016년도 6번째 공고이며(올해 5번의 공고가 이미 있었습니다), **2016.8.29(월)~9.27(화)까지 30일** 동안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및 접수는 itech.keit.re.kr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우선 itech.keit.re.kr에서 인터넷 전산등록을 하신 후 전산등록증을 출력하여, 신청서(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KEIT 본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직접 방문 또는 우편). 신청접수는 주관기관(국내 기업·기관)이 하여야 합니다.

* 산업부 기술개발사업은 KEIT가 기획·평가·관리를 맡고 있으며, 사업신청서의 접수 및 평가를 KEIT가 담당합니다.

재외 한인과학기술자 여러분들의 산업부 기술개발사업에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사업참여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정보공유게시판'을 활용하시어 국내 기업·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 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부와 KEIT는 산업부 기술개발사업에 재외한인과학기술자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1] 산업부 기술개발사업 설명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기술개발사업 설명자료

□ 예산규모 및 집중 투자 분야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는 2016년 기준 약 3.4조원(약 3 billion dollars)의 예산을 가지고 기업, 대학, 연구소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업부 기술개발사업은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소·중견기업과 중장기 기술개발 사업**(사업명: 산업핵심기술개발)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지원 분야는 정보통신을 제외한 전체 산업분야에 대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정보통신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지원.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은 산업부가 지원).



(참고 : '15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통계자료)

□ 산업부 주요 기술개발 사업

산업부는 정책 목적에 맞도록 여러 기술개발사업(program)을 신설하여 산·학·연(산업계·학계·연구계)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약 77개의 사업들이 있는데, 주요 3개 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 ①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기술 발굴 및 주력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추진되는 중형·중장기 기술개발사업입니다. 2016년 기준으로 6,300억원 정도가 투입되는 산업부 기술개발사업 중 가장 큰 사업으로 20개 기술분야(자동차, 조선해양, 섬유, 바이오, 의료기기, 반도체 등)에서 매년 신규 과제들이 기획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과제들은 **통상 3~5년 기간 동안 매년 5~20억원의 정부출연금**이 지원됩니다. 보통 산·학·연 기관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핵심기술개발 20개 기술분야)

- ①지식서비스/엔지니어링, ②나노융합, ③바이오의약, ④디자인, ⑤첨단장비,
 ⑥첨단기계, ⑦지능형로봇, ⑧미래형자동차, ⑨조선해양, ⑩메디칼디바이스,
 ⑪스마트전자, ⑫지능형반도체, ⑬차세대디스플레이, ⑭산업융합, ⑮임베디드SW,
 ⑯뿌리기술, ⑰금속재료, ⑱세라믹, ⑲화학공정, ⑳기능성섬유

(참고1) 정보통신 분야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담당하고 있어 기술분야에 없음

(참고2) 상기 분야는 새롭게 조정된 기술분야로 2017년부터 적용 예정.

2016년도에 공고되는 기술분야는 24개로 상기 20개 분야와 약간 차이가 있음

- ②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 세계 조달참여가 유망하고, 무역구조 개선효과가 큰 핵심 소재·부품 개발을 지원하는 중형·중장기 기술개발사업입니다. 장기 과제인 경우에는 7~10년까지도 추진되며, 산업부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사업입니다.
- ③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 기술혁신 역량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의 핵심기술 개발지원을 통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중소·중견기업만이 주관기관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대기업, 외국기관·기업, 연구소 등은 참여기관으로만 가능). **2~3년 기간 동안 매년 5억원 내외의 정부출연금**이 지원됩니다.

주요 사업명	주요내용	금액(억원)
①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주력기간산업의 경쟁력제고, 미래 신산업 육성	6,386
②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핵심 소재부품의 원천기술개발	2,881
③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기술혁신을 통한 중소·중견기업 성장 지원	1,176

□ 산업부 기술개발사업 과제(project) 종류

산업부 기술개발사업의 과제들은 대부분 정부에서 과제 내용을 기획해서 공고하는 “지정공모”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미국 과학재단(NSF) 등의 기술개발 프로그램과 같이 연구자들이 스스로 기획한 과제를 신청하고, 이들 중 우수한 것을 선정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은 “자유공모” 방식이라고 불리는데, 산업부의 경우에는 일부 사업에서만 이 방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우수연구소사업(ATC) 등). 최근에 산업부에서는 정부가 Top-down으로 과제를 기획하는 “지정공모” 방식과 연구자가 Bottom-up으로 과제를 제안하는 “자유공모” 방식의 중간 형태인 “**품목지정**” 방식도 신설해 운영 중인데, 이것은 정부의 R&D 전략에 따라 연구분야·주제를

선정하여 공고하면, 연구자들이 공고된 연구분야·주제에 맞는 과제를 기획하여 제안하는 방식입니다. 정부가 큰 범주를 결정하면 그 범주 내에서 원하는 과제를 기획하여 제안하는 방식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 산업부 기술개발사업의 특징

외국기관의 경우에는 산업부 기술개발사업에 단독으로 참여는 불가능하며, 참여기관으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기업·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여야 합니다 (☞ 주관기관: 한국 기업·기관 + 참여기관: 외국 기업·기관).

최근에는 산업부 R&D 규정개정을 통해 산업부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확보된 지식재산권(IP)의 경우 100% 수행기관들이 소유하게 되었고(수행기관들 간 IP 지분은 기관들이 자율적으로 결정), 해외기관의 경우에는 민간부담금(매칭펀드)을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울러, 비영리기관(대학, 연구소 등)의 경우에는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기술료란? >

정부에서 지원받은 연구개발 과제(프로젝트)를 성공했을 때, 수행기관이 연구개발 결과를 실시(사용·양도·대여·수출)하는 권리를 획득하는 대가로 정부에 납부하는 금액으로, 정부출연금(Grants)의 일정 비율을 납부. 비영리기관(대학/연구소 등)은 납부하지 않으며,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의 10%, 중견기업은 20%, 대기업은 40%를 납부함. 일시로 내는 “정액기술료”와 매출과 연계하여 납부하는 ‘경상기술료’의 두 종류가 있음

□ 산업부와 KEIT는 국제공동연구 촉진을 위해 노력 중

산업부와 KEIT에서는 재외 한인과학기술자들의 산업부 R&D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개선 및 과제기획 프로세스 보완 등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산업부와 KEIT의 R&D 사업에 보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 또는 애로사항 있으면 KEIT 전략기획팀이나 미국거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EIT 전략기획팀] +82-42-712-9121 / kobj@keit.re.kr

[KEIT 미국거점] +1-408-386-1799 / dragon@keit.re.kr

[첨부2] 사업 공고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447호

2016년도 제6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의 2016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8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 1-1. 사업목적
 - 1-2. 지원대상분야
 - 1-3.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2. 사업추진체계
3. 사업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 3-1. 사업비 지원기준
 -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 3-3.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 4-1. 지원분야
 - 4-2. 신청자격
 -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 4-4. 과제 중복성 제기
5. 평가 절차 및 기준
 - 5-1. 평가절차
 - 5-2. 평가기준(우대 및 감점기준 포함)
6. 근거법령 및 규정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8. 제출 서류 사항
9. 기타 유의 사항
10. 문의처 등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미래신산업을 육성하고 주력기간산업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여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

1-2. 지원대상분야

- 10년 이내에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 기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 원천기술 및 엔지니어링 기술

※ 소재부품산업분야 : 화학공정, 금속재료, 섬유 의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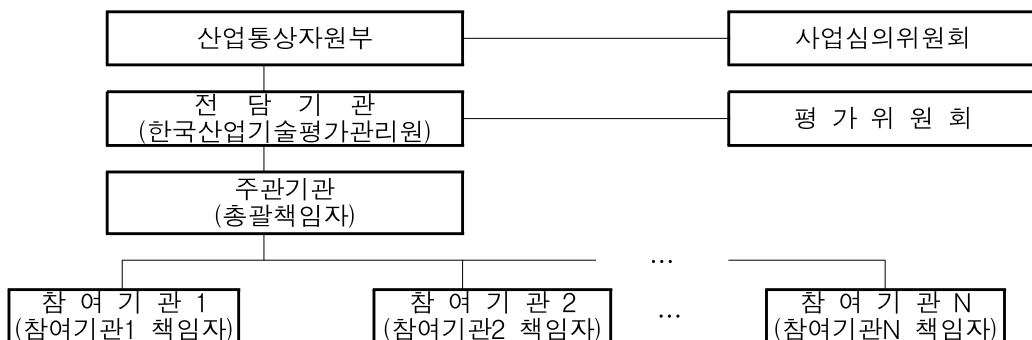
※ 시스템산업분야 : 그린카, 스마트카, 조선해양, 산업용기계, 로봇

1-3.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구분	소재부품산업 분야	시스템산업 분야
세부사업	화학공정, 금속재료, 섬유 의류	그린카, 스마트카, 조선해양, 산업용기계, 로봇
신규예산	54억원	183.5억원
대상과제	7개	15개
지원규모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지원기간	과제별 특성에 따라 3~5년 이내	

2. 사업추진체계

◦ 추진체계 (일반형 과제)



3. 사업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사업비 지원기준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① 과제 사업비 구성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②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수행기관 ¹⁾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²⁾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 ³⁾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중소기업 ⁴⁾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5% 이하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 2)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의 기업임
-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③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수행기관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80.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필요시 부담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함.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 기술료 징수 대상

- 장관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 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과 관련하여 기술료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기술료 징수 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름. 다만, 사업분야 중 바이오, 의료기기 분야는 경상기술료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되, 불가피한 경우 과제별로 정액기술료 선택 가능

◦ 영리기관의 기술료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매출 발생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 ¹⁾	경상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	매출액의 4%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	매출액의 2%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	매출액의 1%

1)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2)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최대 납부한도는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12,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24,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48이내 임

3) 관련 매출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24,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48,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96으로 가산함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 비영리기관의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는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제4조 및 제17조에 따름

3-3.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

□ 산업기술 R&D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은 아래 표와 같음

(단위 : %)

산업 분야	로봇	조선해양	자동차산업핵심		기계산업핵심	산업소재핵심		
			그린카	스마트카	산업용기계	화학공정	금속재료	섬유의류
인건비 비중	48	49	37	37	37	39	39	39

※ 인건비 비중은 사업계획서내의 1차년도 비목별 총괄표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현금, 현물 포함)의 비중을 의미함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6년 3월 1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협약종료 후 반납하여야 함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미 집행액 만큼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집행금액 불인정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구체적 산정기준>

- ◇ 과제의 전체 연구내용이 지식서비스, 소프트웨어 및 설계기술 등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 중소·중견기업인 수행기관(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은 사업계획서 표지에 해당 기술분류 코드번호를 기입하고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 예1) RFP에 표기된 중분류가 대분류인 “지식서비스” 내에 있는 과제는 현금인건비 산정 가능
 - 예2) RFP에 표기된 중분류가 “자동차/철도차량”인 과제가 주요 개발내용이 “차량지능화 기술”, “자동차 관련 SW” 개발로 이루어진 경우, 설계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차량지능화 기술, 차량 관련 SW 기술)을 담당하는 수행기관은 인건비 현금 산정 가능. 이때 사업계획서 표지 상단에 표기된 설계 및 SW 산업기술분류코드가 RFP상 표기된 중분류내의 코드이어야 함(100206, 100211).
 -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별표1]을 참조하고,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코드번호는 공통 운영요령 [별표1]을 참조

-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단, 상기 현금인건비 산정 내용과 중복적용하지 아니함
-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두뇌산업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6년 3월 1일)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됨

- 기존인력은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참여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하여야 함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 과제는 유형별로 2가지 항목(가~나)으로 분류되며, 각 항목별 1개 이상 해당함
예시)

구분	과제 유형		
	추진체계	가. 개발형태	나. 공모형태
A과제	일반형	원천기술형	지정공모형
		혁신제품형	품목지정형 자유공모형

□ 과제 유형(추진체계)

- 일반형 과제 :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과제 유형 - 가 (개발형태)

- 원천기술형 과제 :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 혁신제품형 과제 :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 과제 유형 - 나 (공모형태)

- 지정공모형 과제 :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과 도전적 기술목표(RFP)를 제시
- 품목지정형 과제 :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RFP) 제시 없이 품목(제품, 제품군)만 제시(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
- 자유공모형 과제 : 사업수행자가 자유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을 제안
 - 정책지정형 과제는 금번 공고에 해당사항 없음

□ 지원대상 과제 목록

산업 분야	사업 분야	순번	과제명	주관기관	기술료	과제 유형		비고
						가	나	
소재 부품 산업	화학 공정	1	내열도 및 가공성이 향상된 Heat Booster 종합기술 및 고부가 내열 ABS 수지개발	중소·중견 기업	징수	혁신 제품	지정 공모	
		2	CCD 저감형 고기능성 형광염료 및 친환경 공정기술 개발	중소·중견 기업	징수	혁신 제품	지정 공모	
		3	비결정질 친환경 슈퍼 엔지니어링플라스틱 제조기술 및 소재부품 개발	중소·중견 기업	징수	혁신 제품	지정 공모	
		4	고선영 90이상의 내·외장재 컬러 PCM용 UV경화형 코팅소재 및 공정 개발	중소·중견 기업	징수	혁신 제품	지정 공모	
	섬유 의류	5	탄성 회복률이 우수한 에스터계 열가소성 탄성섬유 개발	중소·중견 기업	징수	혁신 제품	지정 공모	
	금속 재료	6	Thixomolding 및 압출용 탄소 분말 강화형 고강도 마그네슘 합금 및 부품 개발	중소·중견 기업	징수	혁신 제품	지정 공모	
		7	스위칭 소자용 임계 열전도도 향상을 위한 다층 클래딩 소재 및 공정 기술 개발	중소·중견 기업	징수	혁신 제품	지정 공모	
시스템 산업	그린 카	8	FCEV 수소저장시스템 주변장치(Balance Of Tank) 수소누설 최소화 기술 개발	중소·중견 기업	징수	혁신 제품	지정 공모	
		9	배터리 및 실내난방용 경량 고효율 수가열식 유도가열히터시스템 개발	중소·중견 기업	징수	혁신 제품	지정 공모	
		10	디젤 차량 NOx 저감율 향상을 위한 배기 온도 능동제어용 partial combustor 기술 개발	중소·중견 기업	징수	혁신 제품	품목 지정	
	스마트 카	11	마이크로 LED응용 분해능 0.5도 이하의 VGA급 스마트 헤드램프 기술 개발	제한없음	징수	원천 기술	지정 공모	
		12	텔레메틱스와 플랫폼 기술을 융합한 Extended Vehicle 서비스 확장 플랫폼 시스템 개발	중소·중견 기업	징수	혁신 제품	지정 공모	표준화연계
		13	안전 규제 대응 및 사고 방지를 위한 상용 차용 공압식 차량 안정성 제어(ESC, Electronic Stability Control) 시스템 개발	중소·중견 기업	징수	혁신 제품	지정 공모	
	조선 해양	14	해양시추장비 통합 운용제어시스템 및 HILS 기반 검증시스템 개발	중소·중견 기업	징수	혁신 제품	지정 공모	
		15	흡착 공정을 이용한 LNG FPSO용 Dehydration package 기술개발	중소·중견 기업	징수	혁신 제품	지정 공모	
		16	ME 및 ME-GI 엔진용 HPS의 유압펌프 개발	중소·중견 기업	징수	혁신 제품	지정 공모	
		17	액화수소 운송선의 CCS 설계 및 검증기술 개발	제한없음	징수	원천 기술	지정 공모	초고난도
	로봇	18	개인지원 로봇의 안전성(ISO 13482) 인증을 위한 시험 평가 기술 및 인증 프로세스 통합 플랫폼 개발	비영리기관	비징수	원천 기술	지정 공모	표준화연계
		19	고속·고출력 로봇 플랫폼 기반 보행·조작 성능 고도화를 위한 핵심부품 및 로봇 지능 원천기술 개발	제한없음	징수	원천 기술	지정 공모	초고난도
산업 용기계	20	자유공모(농기계)	기업	징수	혁신 제품	자유 공모	수요연계형	
	21	자유공모(보일러)	기업	징수	혁신 제품	자유 공모	수요연계형	
	22	자유공모(온수기)	기업	징수	혁신 제품	자유 공모	수요연계형	

* 지원대상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또는 www.keit.re.kr) 참조
 *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의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4-2. 신청자격 (가.품목지정/자유공모, 나.지정공모)

가. 품목지정/자유공모

- ◇ 품목지정/자유공모의 경우 산업기술 R&D제도 혁신방안('14.6)에 의한 R&D 프로세스 개편에 따라 신청자격, 평가절차, 평가기준, 신청서 제출기한 등을 세분화 하여 적용
 - ① 개념계획서 평가(개념계획서 접수 및 평가)→ ② 사전 서면검토(사업계획서 접수 및 서면검토)→ ③ 사업계획서 평가 順
- ◇ 계획서는 개념계획서, 사업계획서로 구성
- ◇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해 “사업계획서 제출대상”으로 선정된 과제에 한하여 사업계획서 제출 가능

가-① 개념계획서

- ◇ (개요) 제안된 연구과제에 대해 연구자가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의 특성, 중요성, 방법론 등 아이디어를 간략하게 정리한 예비 계획서
- ◇ (서식) 공고시 첨부양식 참조(전담기관 홈페이지)
 - * 평가자의 이해제고를 위해 표, 그림, 차트 등의 도식적 작성 및 자료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정량적 수치 등의 사용을 권고
 - * 표지 부분을 제외하고 연구자를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표현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평가에서 배제함
- ◇ (분량) 총 5페이지 이내(표지, 제안기관 정보 제외시), 공통항목별 1~1.5페이지 내외
- ◇ (개념계획서 평가) 제안자의 발표(면접)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개념계획서를 토대로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해 “사업계획서 제출대상” 선정

□ 주관기관

○ 기업 (단, 대기업의 경우 대기업 주관 가능 과제에 한함(수요연계형))

- 주관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본 사업계획서 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가-② 사업계획서

- ◇ (개요) 선정된 개념계획서(주관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 ◇ (서식) 공고시 첨부양식 참조(전담기관 홈페이지)
- ◇ (온라인 과제발굴 플랫폼)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과한 주관기관은 필요시 “온라인 과제발굴 플랫폼(산업기술지원 사이트, itech.keit.re.kr)”을 활용하여 참여기관 등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음
 - * 주관기관은 개념계획서 신청시, 참여기관을 공개적으로 찾고자 할 경우 개념계획서 ‘공개’를 선택하여 주관기관의 기본정보(과제명, 주관기관명, 연구 책임자)를 공개할 수 있음
 - * 개념계획서 공개는 개념계획서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시까지 공개
- ◇ (사업계획서 제출) 개념계획서 ‘미공개’ 주관기관은 자율적으로, ‘공개’ 주관기관은 참여희망 기관 중 사업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관 등을 선택하여 컨소시엄 구성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주관기관

- 개념계획서 주관기관 자격과 동일하며, 주관기관으로서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과한 신청 기관

□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나. 지정공모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 부채비율 계산시 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이상인 경우(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2항 제1호로부터 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예외로 함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동시수행 과제수	3개	5개

-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 이력 누적수
- 비영리기관의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 영리기관의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

- 실수행) 포함) 과제에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 신청과제의 수행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3회 받은 후 1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 ※ ‘16년 공고 이후 신규 수행한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으로 평가결과를 확정 받는 경우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 이력 누적수로 판정. 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의 지정공모형 과제는 “도전적 R&D 과제”로,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이력 누적 조건에서 제외함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품목지정 과제의 경우, 신청과제가 공고된 분야별 품목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 자유공모 과제의 경우, 신청과제가 공고된 분야별 품목(보일러, 온수기 또는 농기계)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사업을 신청하는 참여연구원의 과제 참여율은 20% 이상이고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여야 하며, 이 중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2항1호부터 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수에 포함하지 아니 하나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는 포함함
- 참여연구원(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 산업기술 R&D 인적자본 투자 확대를 위한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4-4. 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에 의한 기 지원·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 (www.keit.re.kr)의 “자료→지원과제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과제→세부과제→세부과제검색”

◦ 제기기간 : 2016. 9. 12(월) ~ 2016. 9. 27(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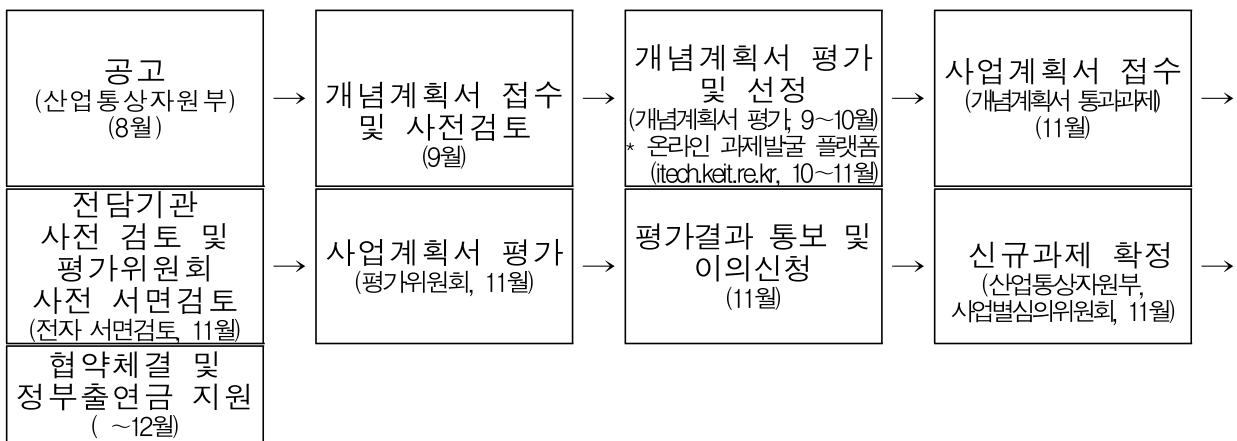
- 제 기 처 : (41069)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8길 32(신서동 115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사업총괄팀(☎ 1544-6633, 053-718-8476)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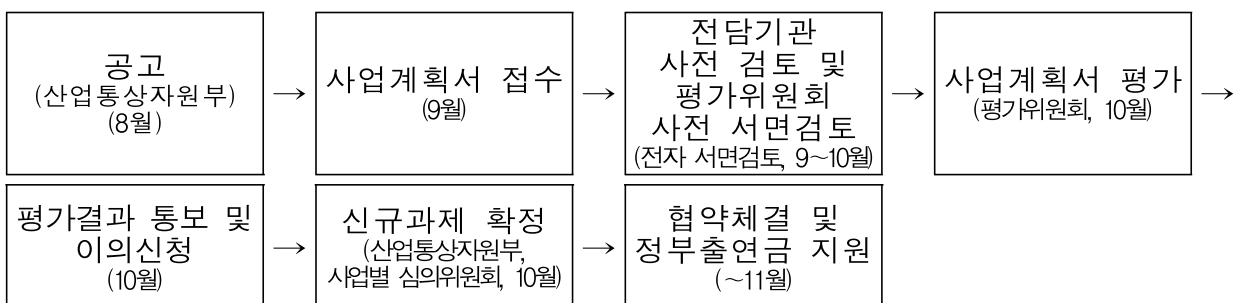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 평가절차(품목지정형, 자유공모형)



□ 평가절차(지정공모형)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 사업계획서 평가 : 피평가자 상호간 “토론평가” 방식을 통한 평가위원회 운영 가능
-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조정·심의
 - ※ 사업별 심의위원회는 접수된 과제수 및 평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생략 가능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5-2. 평가기준

□ 평가항목

① 개념계획서 평가항목

- 품목지정형 및 자유공모형 과제의 개념계획서에 대하여 평가

평가항목	세부 항목
목표 및 필요성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개발목표와 내용(10) : 목표도전성, 구성적절성 • 기술개발 필요성(20) : 지원타당성, 분야적절성, 개발당위성, 시장부합성
기술특성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성(10) : 기술적 혁신성 • 차별성(10) : 기술적 차별성
개발전략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개발방법(10) : 개발방법의 적합성 • 위험극복방법(10) : 위험극복전략의 타당성 • 연구역량(10) : 제안기관의 연구 인프라 및 역량
기대성과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화계획(10) : 사업화효과 • 파급효과(10) : 기술, 경제, 사회적 파급효과

-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 과제 : 개념계획서별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으로 하며 70점 미만인 경우 “사업계획서 제출 비대상”으로 함. 단, 70점 이상인 경우가 다수일 경우 품목 또는 지원분야별로 지원규모를 고려하여 최고득점 순으로 최대 3개 까지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으로 결정함. 또한, 개념계획서가 3개 미만으로 접수된 경우에는 개념계획서 평가를 생략하고 사업계획서 및 기타 신규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토록 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인 신청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 제출을 통보받은 날부터 사업계획서 제출 마감일(‘16. 10. 18(화) ~ 11. 3(목) 18:00까지) 이내에 사업계획서를 포함하여 신규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 개념계획서 평가결과 통보일에 따라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변동될 수 있음

② 사업계획서 평가항목

- 과제 유형에 따라 평가항목을 달리 정함

과제유형	평가항목	세부 항목
원천기술형	기술성(60)	▪목표의 도전성 및 창의성

과제유형	평가항목	세부 항목
	연구역량(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방법 및 추진전략의 창의성 ▪총괄책임자 등 연구조직 역량
	사업화 및 경제성(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화 의지 ▪사업화 계획 ▪경제성
	혁신제품형	
혁신제품형	기술성(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표의 도전성 및 창의성 ▪연구방법 및 추진전략의 창의성
	연구역량(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괄책임자 등 연구조직 역량
	사업화 및 경제성(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화 의지 ▪사업화 계획 ▪경제성

* “혁신도약형 R&D사업”은 도전성·창의성 50%이상,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 및 연구윤리 20%이상으로 선정평가 함

* “초고난도 과제”의 경우 중간평가를 컨설팅 형태로 추진할 수 있음

-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과제에 참여하는 여성연구원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① 총괄책임자가 여성인 경우(5점)
 - ② 참여연구원중 여성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5점)
 - ③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3점)
- * 여성연구원이 참여하는 경우 가점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도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 여성연구원 관련 가점을 받은 경우 총수행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여야 함
- 주관기관이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3점)
 - 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임직원이 선정된 경우 혹은 선정 당시 소속된 기업 포함)
 - ②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 ③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 ④ 해당 과제에 대해 성과공유 사전계약을 체결하여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등록한 경우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수행기관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신청 과제에 총괄책임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수행의 결과로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점)
 - ①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 ②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우수한 연구성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이달의 산업기술상”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 장관상 수상자에 한하며, 전담기관장상 수상자는 가점부여 대상이 아님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이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할 경우 (5점)

※ 평가위원회 평가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시 감점함

- 산업부 소관 사업의 평가결과가 “중단(불성실)” 또는 “불성실수행” 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결과 확정 후 2년 이내일 경우(3점)
- 산업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또는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수행기관인 경우(3점)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을 받은 과제의 수행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 성과활용평가 결과 통보 후 3년 이내인 경우(3점)
- * 본 감점사항은 2016년 최종평가 대상 과제의 성과활용평가 결과부터 반영함
-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때,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2점)

※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을 제하되,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6. 근거법령 및 규정

□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구분	1. 품목지정, 자유공모		2. 지정공모
	① 개념계획서	② 사업계획서	
공고기간	◦ 공고기간 : 2016.8.29(월) ~ 2016. 9. 27(화)까지 30일	(개념계획서 평가 통과 과제)	◦ 공고기간 : 2016.8.29(월) ~ 2016. 9. 27(화)까지 30일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양식교부 : 2016. 8. 31(수) ~ 2016. 9. 27(화)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 (itech.keit.re.kr)	좌동	◦ 양식교부 : 2016. 8. 31(수) ~ 2016. 9. 27(화)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 (itech.keit.re.kr)
인터넷 전산 등록 및 신청서 제출	◦ 전산등록 : 2016. 9. 12(월) ~ 9. 27(화) 18:00까지 ◦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2016. 9. 21(수) ~ 9. 27(화) 18:00까지	◦ 전산등록 : 2016. 10. 18(화) ~ 11. 3(목) 18:00까지 ◦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2016. 10. 31(월) ~ 11. 3(목) 18:00까지 * 개념계획서 평가결과 통보일에 따라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변동될 수 있음	◦ 전산등록 : 2016. 9. 12(월) ~ 9. 27(화) 18:00까지 ◦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2016. 9. 21(수) ~ 9. 27(화) 18:00까지
온라인 과제 발굴 플랫폼 (산업기술 지원 사이트 (itech.keit.re.kr))	◦ 개념계획서 평가 결과 통보 받은날 ~ 30일 이내(사업계획서 접수일) * 개념계획서 평가(9.29~10.4 예정, 일정 변동 가능)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전산 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지원분야, 주관기관, 과제명을 필히 기재

※ 인터넷 전산 접수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 온라인사업관리에서 과제접수(주관기관이 전산 등록)

- ※ 전산등록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itech.keit.re.kr 회원가입 필요)
-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전산접수 불가**
- ※ 일반형과제는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전산접수

□ 신청서 접수처

◦접 수 처 : (41069)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8길 32(신서동 115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사업총괄팀(☎ 1544-6633, 053-718-8476)

- ※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8. 제출 서류 사항

① 개념계획서 (품목지정/자유공모 과제에 해당)

서 류 명	원본/사본	부수	비고
전산접수증	원본	1부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접수확인증을 출력
개념계획서	원본/사본	1부/9부	총10부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원본	1부	
주관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원본	1부	
과제책임자 및 실무책임자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원본	1부	
주관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주관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원본	1부	
주관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원본 또는 사본 *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1부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최근 2년 결산) ※ 가결산 재무제표는 제출 불가

② 사업계획서(지정공모 과제 및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과한 품목지정/자유공모 과제에 해당)

서류명	원본/사본	부수	비고
전산접수증	원본	1부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접수확인증을 출력
사업계획서	원본/사본	1부/9부	총10부
우대 및 감점사항 증빙서류	사본	각1부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원본	각1부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원본	각1부	모든 신청 기관(기업)이 한 장에 날인(기관(기업)별 날장 제출 가능)
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원본	1부	작성은 2부 (1부는 보관 후 선정 시 사용)
(수행기관 중 중소기업만 해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원본	각1부	작성은 2부 (1부는 보관 후 선정 시 사용)
수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모든 기업 제출(비영리는 면제)
주관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사본	1부	
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원본	각1부	
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원본 또는 사본 *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1부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최근 2년 결산) ※ 가결산 재무제표는 제출 불가

※ 수행기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에 해당

※ 과제참여자 :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에 해당

※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과한 품목지정/자유공모 과제의 경우, 주관기관이 개념계획서 평가를 위해 기 제출한 서류는 원칙적으로 제출 생략 가능

9. 기타 유의 사항

□ 지원대상 과제별 신청시 유의사항

-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이라고 표기된 과제는 반드시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되어야 함. 대기업은 “지원대상과제 목록”에 “고위험형”, “시스템형”, “수요연계형”으로 표기된 과제에 한하여 주관기관으로 지원 가능하나,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대기업은 이를 예외하여 주관기관으로 지원이 가능함. 산업기술연구조합은 “중소·중견기업”으로 표기된 과제에 주관기관으로 지원 가능함.

* 참고 : 대기업 주관 가능한 과제 유형

과제 유형	내용
고위험형	미래기술개발 또는 글로벌 시장 창출을 위해 대규모 자금 투입이 필요하며 리스크가 큰 과제
시스템형	대기업은 전체 시스템을 설계하고 중소·중견기업들은 요소기술을 통합·개발하는 과제
수요연계형	대기업이 중소·중견기업 등 타 주체와 연계하여 개발기술의 수요처 또는 소재 공급처로서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과제

- “기술료 비징수” 과제는 정부출연금 100%까지 지원가능하며 수행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하여야 함
- “기술료 징수” 과제는 영리기관이 반드시 수행기관으로서 과제에 참여해야 함
- 표준화 연계 : 사업계획서 내에 표준화 관련 연구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특허 연계 : 사업계획서 내에 특허 확보 관련 연구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디자인 연계 : 디자인 전문회사 등 전문 기관에 의한 연구개발 세부내용이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함
- 글로벌 R&D : 협력기술분야에 대한 최소 1개 이상의 외국소재 기관이 반드시 참여해야 함
- 중소·중견기업이 주관하는 과제는 “바우처 제도” 적용 대상 과제로, 주관기관은 R&D 바우처를 활용하여 참여기관인 비영리 수행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을 수행하게 하고, 그 실적에 대한 확인을 거쳐 일정 시기마다 전담기관에 대금지급을 요청할 수 있음. 이 때, 바우처의 규모는 협약에 명기하며, 참여기관의 원활한 연구개발 수행에 대한 수시 확인과 주관기관의 모니터링 및 요구사항 전달 등을 위하여 단계별 지급을 원칙으로 함 (공고문의 첨부파일 내용 참조 필수)
- 여성연구원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업종(자동차, 철강)의 R&D 과제 신청시, 여성연구원의 참여가 5%보다 낮은 기업은 “여성인력 활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 대상사업 : 자동차산업핵심기술개발 중 스마트카 및 그린카, 산업소재산업핵심기술개발 중 금속재료
- 로봇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은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의결에 따른 “혁신도약형 R&D사업”의 산업통상자원부 지정사업임
- **과제제안요구서(RFP) 별 안내사항**
 - 과제제안요구서(RFP) 20~22번 과제(산업용기계 분야)는 과제제안요구서(RFP)가 없는 자유공모 과제임(연도별 정부출연금은 5억원 이내, 총 수행기간은 3~5년 이내이고 산업용기계 중 농기계, 보일러 또는 온수기와 관련한 개발내용으로 각기 신청 가능하며 동 사업 목적에 부합해야 함)
 - 과제제안요구서(RFP) 14~17번 과제(조선해양 분야)는 동 공고의 ‘3-1 사업비 지원기준’에도 불구하고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을 아래 표와 같이 예외하여 적용함

수행기관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0.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품목별, 과제제안요구서(RFP)별로 명기된 지원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공고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신규평가지 여성연구원 관련 가점을 받은 경우 해당 가점 조건(여성 참여연구원 수, 비율 등)이 미 유지된 경우 전체 여성 참여연구원의 인건비(학생인건비 포함) 집행 금액 전액 불인정 함
- 기타 세부내용은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단독 응모시 재공고
 - 일반형 과제 중 지정공모형 과제에 한하여, 접수결과 단독응모(1:1 경쟁)인 RFP에 대해서는 동일 RFP로 재공고 할 수 있음. 이 때, 상세 내용은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일 이후로부터 2주 내외로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를 통해 재공고하며, 재공고 기간은 20일 이내임
 - 재공고 기간 동안 추가 접수되는 과제의 유·무에 관계 없이, 접수 마감일 이후에는 최초 공고(2016년 8월 29일 공고)와 동일한 평가 항목 및 평가 절차에 따라 평가 진행
 - ※ 자세한 사항은 재공고시 세부내용 참조
- 선정된 과제의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연차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 출연금은 변경될 수 있음
-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특허전문가를 활용하여 해당 과제의 특허대응전략을 최초 협약시점부터 2년 내에 수립하여야 함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함.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 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외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

- 수행기관은 해당 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과제의 다른 수행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음. 이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함
 - 다만,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7조 및 37조의2 참조

□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 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혁신평가단 신청

- 신규과제로 선정된 경우,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는 협약체결 전까지 「산업기술 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6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평가단에 신청하여야 함

□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

- 총괄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은 20% 이상이어야 함

10. 문의처 등

□ 사업설명회 및 정보교류회 개최

- 사업설명회 : 2016년 제6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방법, 절차 안내 및 사업참여와 관련된 규정 등을 안내
- 정보교류회 : 과제기획자(PD, Program Director)의 기획내용 설명 및 신규사업에 참여코자 하는 연구자간 컨소시엄 구성이 용이하도록 정보교환의 장 마련
- 사업설명회와 정보교류회를 통합하여 개최
- 일시 및 장소

일시	지역	장소	비고
9월 2일(금) 13:30~	대전	인터시티호텔 파인(Pine)홀	정보교류회는 사업설명회 후 분야별 설명 진행 예정

* 주차비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가급적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공유 게시판

- 내용 : KEIT홈페이지에 『게시판』을 운영하여 신규사업에 참여코자 하는 연구자간 컨소시엄 구성이 용이하도록 정보교환의 장을 마련
- 게시판 위치
 - <http://itech.keit.re.kr> 메인페이지 ▷ 왼쪽하단 업무바로가기 ▷ “산업기술 정보공유 게시판” 클릭
- 활용방법
 - 관심이 있는 과제제안요구서(RFP)별로 해당과제 참여를 위한 정보를 검색하여 타 기관에서 올려놓은 공동연구 참여조건을 열람하거나
 - 관심기관이 적극적으로 공동연구를 추진할 연구자를 찾는다는 내용을 게시판에 업로드
 - * 재외한인공학인 등 해외 연구자도 사업참여를 위해 게시판 활용 가능
 - 정보교류회에 참석하는 경우, 관심이 있는 과제제안요구서(RFP)별 게시판에 연구자의 소속기관명 등을 기재하여 행사 당일까지 사전등록 후 참석 가능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사업계획서 전산 등록 관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 1544-6633)

구 분		과제제안요구서(RFP)		과제접수/신규평가 일정/절차	
사업	지원분야	담당부서	연락처 (053-718-내선번호)	담당부서	연락처 (053-718-내선번호)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총괄 사업총괄팀 053-718-8476					
소재부품산업 분야	화학공정	화학공정PD	8378	섬유화학금속팀	8312
	금속재료	금속재료PD	8376		8398
	섬유의류	기능성섬유PD	8377		8358
시스템산업 분야	그린카	미래형자동차PD	8261	수송플랜트팀	8489
	스마트카				8472
	조선해양	조선해양PD	8370		8423, 8462
	산업용기계	첨단장비PD	8374	기계로봇팀	8422
	로봇	지능형로봇PD	8262		8414, 8413